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8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이 영·김도읍·최승재

추경호 · 양금희 · 허은아

金炳旭・김정재・한무경

김영식 · 서일준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매우 중요함. 하지만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 용이 있음.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을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8"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및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1개 초과인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할 것
- 2. 「상법」 제40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사 를 선임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2. 차등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 3. 차등의결권주식의 총수
- 4. 차등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5.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자의 자격요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차등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1. 차등의결권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 2.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차등의결권주식의 주주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차등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식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전환한다.
- ⑤ 그 밖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	
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의2부터 <u>제15조의11까지 및 제</u>	<u>제15</u> 조의11까지, 제16
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	<u> 조의3 및 제16조의8</u>
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	
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	
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
	행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
	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 및 제36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 다 1개 초과인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이 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할 것
- 2. 「상법」 제409조제4항에도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선임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2. 차등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 결권의 수
- 3. 차등의결권주식의 총수
- 4. 차등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5.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자의 자격요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차등 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1. 차등의결권주식이 양도되거 나 상속된 경우
- 2.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 처기업이 제2조의2에 따른 벤 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 3. 차등의결권주식의 주주가 차 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 기업의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차등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식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전환한다.
- ⑤
 그
 밖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